

보수규정 [1995. 2. 10 규정 제5호]

전부개정 2012. 3. 28 규정 제139호
일부개정 2013. 1. 25 규정 제146호(직제규정)
일부개정 2014. 12. 17 규정 제150호(직제규정)
일부개정 2015. 4. 7 규정 제152호(직제규정)
일부개정 2016. 12. 24 규정 제155호
일부개정 2017. 2. 27 규정 제159호(직제규정)
일부개정 2017. 6. 26 규정 제160호
일부개정 2017. 12. 29 규정 제162호
일부개정 2018. 4. 1 규정 제164호(직제규정)
일부개정 2018. 4. 1 규정 제165호
일부개정 2019. 6. 11 규정 제170호(직제규정)
일부개정 2020. 4. 1 규정 제174호
일부개정 2021. 12. 29 규정 제182호
일부개정 2022. 7. 4 규정 제184호
일부개정 2023. 8. 24 규정 제191호
일부개정 2023. 10. 1 규정 제193호(직제규정)
일부개정 2023. 10. 1 규정 제194조(인사복무규정)
일부개정 2023. 10. 1 규정 제195호
일부개정 2023. 12. 4 규정 제199호
일부개정 2024. 4. 2 규정 제201호
일부개정 2024. 7. 15 규정 제203호
일부개정 2025. 4. 1 규정 제208호
일부개정 2025. 6. 30 규정 제209호(직제규정)
일부개정 2025. 12. 11 규정 제213호
일부개정 2026. 4. 15 규정 제21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소속 임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7.)

제2조(적용범위) ① 재단법인 경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임원·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4.7.)

②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연봉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 제2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다만, 보수 인상에 관한 사항은 미리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 대하여는 연봉과 연봉외 급여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적 급여를 말한다.
4.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및 그 밖에 규정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원장의 경우에는 이사장과의 계약에 의한 별도의 금액을 말한다.
6. “기본연봉”이란 원장과 피임용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7. “성과연봉”이란 피임용자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8. “연봉외 급여”란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수당으로서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및 연차수당 등을 말한다. (개정 2022.7.4.)
9. “보수월액”이란 1년간 총 보수액을 12월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0. “일할계산”이란 보수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보수의 산정 및 지급

제4조(재직기간의 특례) 휴직기간은 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직기간 또는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삭제(2016.12.24.)
2.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3. 직무수행상 얻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
4. 연구원의 필요에 따라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또는 재외국민 교육기관 등에 근무하거나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기간 및 가족돌봄휴직 (개정 2024.7.15.)
6. 정직처분기간 (신설 2016.12.24., 개정 2024.7.15.)

제5조(지급일) ①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0.4.1.)

②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그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산정방법) ①보수계산은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②보수는 신규임용·승진·승급·감봉, 기타 임용에 있어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 하여 지급한다. 다만,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해직 또는 면직될 때에는 당월분의 기본연봉월액 또는 봉급전액을 지급한다.

③퇴직·휴직 및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연구원의 업무수행상 계속 근무할 때에는 그 기간을 일할계산 하여 지급한다.

제7조(유급휴가 기간의 보수) ①유급휴가 기간에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공상휴가 기간 중 재해보상·배상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는 자는 그 차액의 보수만을 지급한다.

② 「인사복무규정」 제38조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며, 6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4.1.)

③ 「인사복무규정」 제38조 제12항에 따른 (유급)난임치료휴가 또는 같은 규정 [별표 2]의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직원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차액의 보수만을 지급한다. (신설 2025.4.1.)

제8조(휴직자의 보수) ① 연구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100분의 70 또는 기본연봉 월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하고, 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그 기간 중 봉급의 100분의 80 또는 기본연봉 월액의 100분의 60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근무기간에 관계 없이 휴직기간 중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② 「인사복무규정」 제45조제1항제8호에 따른 휴직자에 대한 보수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직무연수자의 보수) 「인사복무규정」 제48조에 따른 직무연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23.10.1.)

1. 연구직 : 기본연봉

2. 행정직 : 봉급,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교통비

제10조(직위해제 기간 중 보수의 지급) ① 직위해제 된 자에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보수의 일부를 지급한다.

1. 인사복무규정 제49조의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80퍼센트(기본연봉 월액의 60퍼센트)

2. 인사복무규정 제49조의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50퍼센트(기본연봉 월액의 4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기본연봉 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② 인사복무규정 제49조의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직위해제 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복귀한 날을 기준으로 직위해제 처분기간 동안 지급이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③ 인사복무규정 제49조의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 인사복무규정 제49조의 제1항 제5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결과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한 경우에는 복귀한 날을 기준으로 직위해제 처분기간 동안 지급이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3.10.1.]

제10조의2(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보수) ①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보수는 「직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에 따른다.

②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실설 2023.10.1.]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보수) ①「인사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연구원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7조의 초과근무수당 및 제37조의 파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인사복무규정」 제11조에 따라 파견된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11조의2(임금피크대상자의 보수) ①인사복무규정 제50조의3의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되는 행정직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제20조의 봉급 및 제24조~제26조, 제28조~제31조의 수당(이하 "봉급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매년 임금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임금조정률로 금액·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1.)

1. 정년퇴직 직전 2년차 임금조정률 : '봉급 등'의 10%

2. 정년퇴직 직전 1년차 임금조정률 : '봉급 등'의 20%

②기타 임금피크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4.]

제3장 연봉제(연구직)

제12조(적용 대상) 원장, 정관 제26조 제1항의 임기제 직원 및 연구직은 연봉제를 적용한다. (개정 2013.1.25., 2014.12.17., 2017.2.27., 2018.4.1., 2019.6.11., 2025.6.30.)

제13조(연봉 산정) ①원장의 연봉은 경기도지사와의 경영성과계약에 따라 이사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정관 제26조 제1항의 임기제 직원의 연봉은 원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4.12.17., 2018.4.1., 2019.6.11., 2025.6.30.)

③연구직의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직원의 기본연봉 산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기본연봉에 전년도 평가에 따른 가산급과 당해연도 처우개선분의 합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8.24.)

⑤기본연봉 가산급은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산급을 산정함에 있어 경력 확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가산급 산정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23.8.24.)

⑥기본연봉 가산급은 전년도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한다. (개정 2023.8.24.)

구 분	S	A	B	C	D
등급 비율	5%	10~20%	50~70%	10~20%	5%
지급 비율	200%	125%	100%	75%	0%

⑦기본연봉 가산급은 동일 직군의 기본연봉 평균액의 자연증가분으로 한다. 여기서 자연증가분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고 경기도지사가 고시한 공무원 호봉승급분 등 자연증가분을 따른다. (개정 2023.8.24.)

⑧원장은 연봉제 직원의 총연봉(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합) 상한을 정한다. 여기서 총연봉의 상한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액(연봉외 급여 제외)으로 한다. (개정 2023.8.24.)

⑨원장은 연봉제 직원의 직급별 기본연봉 하한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의 해당 금액에 당해 연도 처우개선분의 합한 금액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3.8.24.)

⑩제5항부터 제9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연봉 가산급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3.8.24.)

제14조(연봉계약의 체결) ①원장의 연봉계약은 이사장과 체결한다.

②정관 제26조 제1항의 임기제 직원 및 연구직의 연봉계약은 원장과 체결하며, 연봉계약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참고하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5., 2014.12.17., 2017.2.27., 2018.4.1., 2019.6.11., 2023.8.24., 2025.6.30.)

제15조(신규임용자의 연봉) ①신규임용자의 연봉은 원장이 정한 기준연봉에 [별표 2] 및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경력을 반영하여 산정하되, 원장은 연구원 직원 및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연봉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3.8.24.)

② 삭제(2023.8.24.)

제16조(연구직의 성과연봉) ①성과연봉은 기본연봉 평균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기준액으로 하며,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

②성과연봉의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18.4.1.)

평정등급	A	B+	B	C	D
지급인원	5%~10%	20%~25%	40%	20%~25%	5%~10%
지급액	지급기준액 × 150%	지급기준액 × 125%	지급기준액 × 100%	지급기준액 × 75%	지급기준액 × 50%

③성과연봉은 평정등급에 따라 지급하되, 측정된 성과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④퇴직자는 별도 평가를 거쳐 성과연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평정등급 간 지급인원 비율에 포함한다. (개정 2017.6.26.)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연봉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기본연봉 가산급의 제한) 「인사복무규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연봉 가산급 지급을 제한한다. (개정 2023.8.24.)

제18조(승진시 연봉 책정) 직원이 승진한 때에는 승진하기 전 기본연봉의 100분의 5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19조(강등시 연봉 책정) 직원이 강등된 때에는 강등되기 전 기본연봉에서 보수규정 제18조에 따라 승진시 가산된 금액을 감액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제4장 호봉제(행정직)

제20조(봉급) ①행정직은 호봉제를 적용하며 봉급표는 [별표 4]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봉급표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설 2026.4.15.)

제21조(호봉의 확정) ①직원의 호봉 확정은 연구원에 근무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직원을 신규임용할 때의 초임호봉기준표는 [별표 2]와 같다.

③경력이 있는 자를 신규임용할 때의 기준 초임호봉은 [별표 3] 경력환산기준표에 의한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호봉을 제2항의 초임호봉에 가산하며,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확정한다.

④호봉 확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한다.

제22조(호봉의 재확정) ①직원이 재직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다시 확정한다.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해당 직원에게 적용되는 초임 호봉책정의 방법이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호봉을 다시 확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호봉의 재확정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이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제1항제2호의 경우 호봉 재확정은 초임 호봉확정의 방법에 따른다.

④호봉 재확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한다.

제23조(근속가봉) ①직급의 최고호봉을 받는 직원으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승급 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근속가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근속가봉은 월 21,000원을 지급하되, 가산하는 회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24조(정근수당) ①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근속 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5]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1. 1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 :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 중 전년도 12월 1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
2.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 : 7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 중 해당 연도 6월 1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

② 제1항의 근속 연수는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호봉을 기준으로 한다.

제25조(장기근속수당) ①직원에 대하여 그 근무연수에 따라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임기제 직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근무연수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근속연수와 「인사복무규정」 제4조에 따른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인사복무규정」 제21조에 따라 승진 및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제4조 각 호의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6조(특수업무수당) ①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은 [별표 8]의 기준에 의한다.

제27조(초과근무수당) ① 초과근무를 하고자 하는 직원은 사전에 소속부서장으로부터 초과근무명령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초과근무명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12.24.)

② 초과근무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포함)은 초과근무 일자별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초과근무명령과 수당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52시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2.24.)

③일·숙직 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비 등의 실비를 고려하여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9]의 기준에 맞춰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16.12.24.)

1. 관리·정보직 2급 이상 직원
2. 일반 업무에 대한 방침 및 소관업무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집행 등에 대한 결정권과 소속 직원에 대한 출장, 연장근로 지시, 휴가승인 등 노무관리상의 지휘 감독 권한의 전결권을 가진 관리자
3.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자
 - 가. 초과근무수당을 실적과 관계 없이 균등 배분 하는 자
 - 나. 대리입력, 사적용무 후 입력, 심야복귀 후 입력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는 자
4. 초과근무와 관련하여 다른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경우

제28조(교통비) 호봉제 적용을 받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급한다. 다만, 전용 승용차량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9조(명절휴가비) 호봉제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제30조(가계지원비) 호봉제 적용을 받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계지원비를 지급한다.

제31조(직무수행비) 호봉제 적용을 받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비를 지급한다.

제32조(성과상여금) ①성과상여금은 행정직에 대하여 지급하며,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10.1.)

- ②성과상여금은 재직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성적평정 대상자는 평정등급에 따라 지급하고, 근무성적평정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퇴직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근무성적 평정등급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평정등급 없이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중간등급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④그 밖에 성과상여금의 등급별 지급액 및 인원비율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연봉제(공무직)

- 제32조의2**(공무직의 보수) ①공무직의 보수는 연봉제(연구직)를 기본으로 적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②공무직의 초과근무수당은 호봉제(행정직)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 제32조의3**(연봉계약의 체결) 공무직의 연봉계약은 원장과 체결하며, 연봉계약은 인사복무 규정의 [별지 제2호 서식]을 참고하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 제32조의4**(신규임용자의 연봉) 신규임용자의 연봉은 원장이 정한 기준연봉에 [별표 2] 및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경력을 반영하여 산정하되, 원장은 연구원 직원 및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연봉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6장 공통수당 등

- 제33조**(가족수당) ①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10.1., 2025.12.11.)
-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해당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3.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4.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및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인
- ③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이를 부양하는 직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그중 1명의 직원

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④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은 부양가족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도 또한 같다.

⑤가족수당은 관공서의 기록 등에 등재된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월로부터 지급하고, 부양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자에 대한 수당은 요건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한다.

⑥휴직(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월의 가족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월 도중에 휴직 처분을 받거나 복직된 경우에는 처분일 또는 복직일이 속하는 월의 수당을 지급한다.

⑦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⑧ 삭제(2025.12.11.)

제34조(자녀학비보조수당) 본조 삭제(2022.7.4.)

제35조(연차수당) 「인사복무규정」에 의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9]에 따른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원장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6조(봉급조정수당) ①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봉급조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10] 중 제1호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③봉급조정수당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별표 10] 중 제2호의 산입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봉급액 및 연봉액에 각각 산입한다.

제37조(파견수당 등) ①교통이 불편하고 근무환경이 특수한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 또는 「인사복무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파견직원에 대하여는 월 50만원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파견수당의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8조(정액급식비) 임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6.4.15.)

제39조(실비의 보상) ①이사와 감사가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비상임연구위원 및 연구자문위원이 연구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거나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③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한 직원으로서 퇴근시간 이후 1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실비의 변상과 관련한 지급 금액,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한다.

제40조(여비) 직원의 국·내외 여비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기관성과급) ①원장은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를 장려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의 실적에 따른 성과급(이하 “기관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급대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10.1.)

1.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3조에 따른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처분을 받은 자
2.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등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6.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7.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별표1의3]에 따른 채용 비리(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③그 밖에 기관성과급의 지급기준 및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10.1.)

제7장 퇴직금 및 명예퇴직수당 등

제42조(퇴직금) 직원으로서 1년 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42조의2(해임등에 따른 퇴직금의 제한)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1/2를 줄여 지급한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조의2, 제30조에 따라 해임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의 1/2를 줄여 지급한 후 그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금의 1/2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3.10.1.]

제43조(퇴직금의 지급기준) ①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보수를 지급한다.

②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보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44조(재해보상) ①임·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개정 2016.12.24.)

②삭제(2016.12.24.)

제45조(명예퇴직수당) 「인사복무규정」 제55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해당 퇴직자가 퇴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

1.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 퇴직 당시 기본급의 반액 × 정년 잔여 월수
(개정 2016.12.24.)
2.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 퇴직 당시 기본급의 반액 × [60+(정년 잔여 월수 - 60) / 2] (개정 2016.12.24.)
3. 정년 잔여기간이 10년 초과인 자 :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제46조(조기퇴직수당) 「인사복무규정」 제55조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해당 퇴직자가 퇴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한다.

1. 20년 미만 근속자가 직제 및 정원의 개폐와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위 사유 발생 일로부터 1년 이내 퇴직하는 자 : 퇴직 당시 기본급 × 6개월분
(개정 2016.12.24.)
2. 삭제 (2016.12.24.)

제47조(근속기간의 계산) ①근속기간의 계산은 임용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 계산한다. 다만, 고용계약 직원으로서 고용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고용된 때에는 계속 근속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1년 미만의 단수는 월할계산 하고, 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한다.

제48조(퇴직금의 지급) ①퇴직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때 신청자의 요구에 의하여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당사자와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계속 근무하면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③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근속기간은 중간정산 기간의 최종일 다음 날부터 새롭게 기산하며, 중간정산후 퇴직시까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49조(수령자) ①퇴직금은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유족 또는 가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유족 및 가족의 범위와 순위는 「민법」중 친족 및 상속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50조(퇴직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퇴직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퇴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제51조에 따른 기금부담금 및 기금의 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제51조(기금부담금) ①연구원은 퇴직금의 재원에 필요한 기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매년 적립하여야 하는 기금부담금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근무 연수에 따라 개인별로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 총액(이하 “퇴직금 추계액”이라 한다)에서 이미 적립된 기금을 제한 금액으로 한다.

$$\text{기금부담금} = \text{퇴직금 추계액} - \text{이미 적립된 기금}$$

③기금부담금은 매년말까지 제52조제1항에 따른 계정에 불입하여야 한다.

제5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기금은 원장의 책임으로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은 최대의 수익이 발생하는 방법으로 안정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원장이 결정하여 이를 시행한다.

제53조(기금운용상황 보고) 원장은 기금운용상황을 결산보고서와 별도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계약의 체결) 원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관련 조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와 기금의 운용관리 업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2012. 3.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8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의 적용특례) [별표4]직원봉급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1. 25)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17)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4. 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2.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4.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4]는 2018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2019. 6.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4.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4]는 2020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2021. 12.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0조(봉급)의 [별표 4] 및 제38조(정액급식비)는 공포일 현재 재직자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7.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계약직 운영규칙과 초빙연구원·비상임연구위원 등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① 계약직 운영규칙 [별지 제1호]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별지 제2호] 무기계약 근로자 근로계약서 상 “연봉외 급여” 항목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삭제한다.
- ② 초빙연구원·비상임연구위원 등 운영규칙 [별지 제1호] 초빙연구원 근로계약서 상 “연봉외 급여” 항목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삭제한다.

부 칙(2023. 8.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별표 4]의 보수인상분은 2023.1.1.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 ② 제1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경력급 폐지, 기본연봉 가산급에 관한 사항은 2023.1.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되, 기본연봉 가산급의 차등은 2024년부터 적용한다.
- ③ 제13조제8항 및 제9항 연봉의 상·하한에 관한 사항은 2024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 10.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표 7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감액 사유가 발생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3. 12.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4.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포일 현재 재직자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7. 15.)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4] 개정 규정은 공포일 기준 재직자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6.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12.11.)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4.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8조(정액급식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공포일 기준 재직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1] (삭제 2023.8.24.)

[별표 2] (개정 2023.10.1., 2023.12.4.)

초임 호봉 기준표

구 분	학위, 학력, 자격	초 임 호 봉
연구직 행정직 공무직	박사학위 소지자	7
	석사학위 소지자	4
	학사학위 소지자	3
	기 타	1

[별표 3] (개정 2023.10.1., 2023.12.4.)

경 력 환 산 기 준 표

구 분	경 력 내 용	환산율
연구 직	1. 군 복무기간	100%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출연기관, 대학, 법인체에서 근무한 연구원 요구직과 동일한 정규직 근무경력	100%
	3. 기타 제2호의 비정규직 근무경력, 대학조교, 주당 3시간이상의 대학시간강사 및 일반회사에서 근무한 연구원 요구직과 동일한정규직 근무경력	50%
행정 직	1. 군 복무기간	100%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출연기관, 대학, 법인체에서 근무한 연구원 요구직과 동일한 정규직 근무경력	100%
	3. 기타 제2호의 비정규직 근무경력 및 일반회사에서 근무한 연구원 요구직과 동일한 정규직 근무경력	50%
공 무 직	1. 군 복무기간	100%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출연기관, 대학, 법인체에서 근무한 연구원 요구직과 동일한 정규직 근무경력	100%
	3. 기타 제2호의 비정규직 근무경력 및 일반회사에서 근무한 연구원 요구직과 동일한 정규직 근무경력	100%

[별 표4] (개정 2018.4.1., 2020.4.1., 2021.12.29., 2023.8.24., 2023.10.1., 2024.4.2., 2025.4.1., 2026.4.15.)

행정직의 봉급표

(단위: 원)

계급 호봉	행정직 1급	행정직 2급	행정직 3급	행정직 4급	행정직 5급	행정직 6급	행정직 7급
1	2,647,660	2,378,860	2,131,850	1,890,240	1,685,070	1,597,570	1,512,860
2	2,741,950	2,464,610	2,210,230	1,974,040	1,761,150	1,671,800	1,584,560
3	2,847,080	2,560,300	2,295,740	2,060,950	1,841,240	1,749,030	1,658,790
4	2,954,390	2,657,930	2,385,760	2,149,810	1,924,350	1,827,640	1,730,020
5	3,064,460	2,757,980	2,478,690	2,240,540	2,009,420	1,906,710	1,799,070
6	3,175,930	2,859,170	2,574,460	2,332,750	2,095,290	1,982,690	1,865,560
7	3,288,780	2,961,890	2,672,200	2,425,540	2,182,330	2,055,180	1,929,550
8	3,403,820	3,066,670	2,772,260	2,518,330	2,265,310	2,125,040	1,990,980
9	3,518,620	3,170,970	2,873,360	2,606,750	2,344,510	2,191,900	2,050,690
10	3,634,930	3,276,560	2,975,370	2,690,530	2,419,550	2,255,980	2,107,640
11	3,751,230	3,382,270	3,077,840	2,770,070	2,491,580	2,317,430	2,162,960
12	3,868,110	3,488,550	3,173,750	2,845,700	2,560,060	2,376,440	2,216,110
13	3,975,320	3,586,170	3,264,800	2,917,160	2,625,760	2,433,160	2,267,740
14	4,076,640	3,678,270	3,350,080	2,985,160	2,687,890	2,488,020	2,317,540
15	4,171,270	3,764,030	3,430,780	3,049,940	2,747,610	2,539,770	2,365,150
16	4,260,140	3,844,820	3,506,850	3,110,930	2,804,080	2,589,570	2,411,480
17	4,343,260	3,920,540	3,578,670	3,169,360	2,858,830	2,636,940	2,455,040
18	4,420,480	3,990,870	3,646,220	3,224,690	2,910,130	2,683,050	2,496,890
19	4,494,250	4,057,510	3,710,080	3,277,030	2,959,230	2,726,510	2,537,250
20	4,562,830	4,120,210	3,769,910	3,327,390	3,006,720	2,768,690	2,575,620
21	4,626,680	4,178,180	3,827,190	3,374,640	3,051,450	2,808,810	2,612,380
22	4,687,320	4,233,510	3,880,560	3,419,250	3,094,210	2,847,980	2,646,970
23	4,743,570	4,284,570	3,930,940	3,461,790	3,135,470	2,884,640	2,679,700
24	4,797,050	4,332,980	3,978,080	3,502,600	3,174,660	2,920,150	2,710,370
25	4,846,730	4,378,400	4,023,270	3,541,100	3,211,670	2,954,160	2,740,780
26	4,892,960	4,420,370	4,064,990	3,577,520	3,246,710	2,986,890	2,769,970
27		4,460,020	4,104,970	3,612,330	3,280,820	3,017,320	2,798,210
28		4,497,240	4,142,450	3,644,840	3,313,110	3,048,090	2,826,420
29			4,178,070	3,676,540	3,343,760	3,078,890	2,854,670
30			4,211,280	3,705,930	3,374,420	3,109,670	2,882,880
31				3,735,330	3,405,050	3,140,450	2,911,120
32				3,764,720			

[별표 5]

정 근 수 당 지 급 구 분 표

근속년수	지 급 액
1년 미만	월 봉급액의 0% 해당액
2년 "	" 5% "
3년 "	" 10% "
4년 "	" 15% "
5년 "	" 20% "
6년 "	" 25% "
7년 "	" 30% "
8년 "	" 35% "
9년 "	" 40% "
10년 "	" 45% "
10년 이상	" 50% "

[별표 6] (개정 2023.10.1.)

장기근속수당 지급 구분표

지급대상	근 무 연 수	월지급액	비 고
행 정 직	· 20년이상	100,000원	
	· 15년이상 20년 미만	80,000원	
	· 10년이상 15년 미만	60,000원	
	· 5 년이상 10년 미만	50,000원	

- 주) 1.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자에게는 월 1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
2. 근무연수가 25년 이상인 자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

[별표 7](개정 2022.7.4., 2023.10.1.)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감액 지급표

구 분	정직기간중	감봉기간중	직 위 해 제 및 휴 직 기 간 중		
			봉급의 80퍼센트 (기본연봉월액 60퍼센트)가 지급 되는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기본연봉월액40 퍼센트)가 지급 되는 경우	봉급의 30퍼센트 (기본연봉월액 20퍼센트)가 지급 되는 경우
감액금액	수당 전액	「근로기준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감액	수당액의 20퍼센트	수당액의 50퍼센트	수당액의 70퍼센트

[별표 8]

특수업무수당 지급기준

수 당 명	지 급 대 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사 서 수 당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3년 이상 근무자 월 50,000원
전산업무수당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 하는 직원	1년 이상 3년 미만 월 30,000원 1년 미만 월 20,000원
기술업무수당	시설·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자동차운전수당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월 40,000원

[별표 9] (개정 2016.12.24., 2017.12.29)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기 준
초과근무수당	통상임금 / 209 × 1.5 × 초과근무시간
연 차 수 당	통상임금 / 209 × 8시간 × 보상일수 ※ 최대보상일수는 15일

[별표 10]

봉급조정수당 지급기준 및 봉급 산입방식

1. 봉급조정수당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기 준	
	연봉제의 적용을 받는 직원	연봉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직원
지급액	기본연봉액의 54퍼센트의 12분의 1의 4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별표1의 직원봉급표의 42.5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일	8월 및 10월	

2. 봉급조정수당의 봉급 산입방식

구분	연봉제 적용을 받는 직원	연봉제 적용을 받지 않는 직원
산입 방식	전년도 기본연봉액 × 0.54 × 봉급 조정수당의 전년도 6월간 평균지급률	전년도 봉급액× [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6월간 평균지급률÷(1+10.7/12)]

[비고] 봉급조정수당의 지급 및 감액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